

물품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자산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품의 처분방법 등을 구체화함

2. 주요 개정 내용

- 물품의 매각방법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는 경·공매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
- 물품의 무상양도 사유 및 대상을 명확히 함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2년 9월 26일 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지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지원처 이상훈 선임주임
- 담당자(이메일) : dandelion@khug.or.kr
- 전화번호 : 051-955-5364
- 팩스번호 : 051-955-5405